

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에서 의결된
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
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

인

2015년 11월 5일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070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

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자살예방을 위한”을 “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해당 소관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